의안번호	제 58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17일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김국기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588

발의연월일 : 2020년 11월 17일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1. 제안 이유

난독증으로 인하여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안 제2조)

나.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지원사업(안 제5조)

마. 진단검사(안 제6조)

바. 교사연수(안 제7조)

사. 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아. 위원회의 구성(안 제9조)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93호
(2020. 11. 11. ~ 2020. 11. 15.)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생의 난독증으로 인한 학습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독증”이란 대뇌 특정부위에 신경학적 원인을 가진 특정 학습장애의 하나로서 듣고 말하는데 이상이 없으나, 음소인식 능력의 부족으로 읽기와 문자해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인지능력과 독해 어휘력 및 배경지식의 성장을 방해하여 읽기 경험을 감소시키는 증상을 말한다.
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난독증 진단 검사 실시 및 난독증 학생 실태조사
2. 난독증 학생·학부모 상담

3. 난독증 해결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지원

4.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

2. 난독증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3. 난독증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유관기관 연계 지원

4. 난독증 학생 교육프로그램 지원

5. 그 밖에 난독증 학생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난독증 진단검사(이하 “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난독증 학생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 진단검사 방법과 대상 및 시기 등 진단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포함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상담, 치료 등 난독증 극복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교사연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담당 교사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난독증 학생 진단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난독증 인식개선 및 학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부서 및 협력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난독증 학생 교육 및 치료 전문가
2. 난독증 학생의 교육, 복지, 상담에 관한 전문가
3. 초 · 중 · 고 · 특수학교장
4. 그 밖에 난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격장애나 지적(知的)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학생
2. 학업 중단 학생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체계적 실시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교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관련 연수를 이수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업 중단의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숙려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그 숙려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학생에 대한 판단기준, 숙려기간, 숙려기간 동안의 출석일수 인정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760호, 2020. 6. 9., 타법개정]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이하 “학습부진아등”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교육감은 교원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연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연수의 목적 및 내용
2. 연수의 개설 및 운영 기관
3. 연수의 종류

4. 교육과정별 연수 대상 및 인원
5. 연수의 이수기준
6. 그 밖에 연수의 운영 및 연수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⑧ 제7항에 따른 연수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학습부진아등의 판별·진단·지도·예방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3.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지도 우수 사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습부진아등의 학습능력 향상에 필요한 사항

충청북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난독증 진단 및 전문치료기관 연계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가능하므로, 업무처리를 위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 난독증 학생 진단비: 2020년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학습상담사(6명) 난독증전문가 자격증 취득으로 난독증척도검사 및 KOLRA(한국어읽기) 검사 무료 진단 가능
- 난독증을 포함한 센터 내 치료지원비 55,000천원 예산 수립